



Environment Assembly

Distr.: General
21 August 2022
Original: Korea

Main Submitter: The Republic of Cuba

Co-Submitter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lamic Republic of Iran, Italian Republic, Kingdom of Norway,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Korea, State of Libya, Swiss Confederation,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Kingdom of Thai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 draft resolution

21 세기 신냉전시대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모색

유엔환경총회(UNE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의 내용과 정신을 상기하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기후 변화로 인해 벌어진 재난 사태들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탄소 절감을 위해 선진국 국가들이 탄소 절감을 위한 기술 지원과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인정하며,

현재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기존 남북 간 체결되었던 여러 협정의 평화 정신을 상기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과정에서 한반도 그린 공동체로 나아가는 남북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평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것이 신냉전의 시대 속의 그린 데탕트 모색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해 유엔환경총회 회원국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정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1.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는 핵 보유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의 실상을 재확인하며:

- (a)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와 대이란제재의 해제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협의를 나눈 것을 고려하며;
-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은 더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대북제재와 대이란 제재가 완화된 이후 해당 국가의 핵무기를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기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은 현재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10년 이내에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 (d) 인권 개선의 수준은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 수준까지의 개선을 약속하며;
- (e) 해당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에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광시설 개보수 및 탄소 중립 산업 이외에도 부수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한반도 기후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한반도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하며:

(a) 한반도 기후공동대응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근거하여 수립될 것을 강조하며;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방지와 수자원 관리를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위한 수자원 협력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약속하며;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산림 복구에 연계된 사업을 통해 임축 복합 모델과 가축의 배설물 및 임농업 복합을 통해 북한의 식량 안보 및 산림 조성을 유도할 것을 약속하며;

(d) 그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노르웨이의 산림 병충해 방제 기술을 보급받을 것을 제안하며;

(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펀드 지원을 통하여 산림 복구 자금을 조달할 것을 촉구하며;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에너지 효율 기기 보급 사업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후 예측으로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에너지 기후변화체를 설립할 것을 약속하며;

(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교토의정서(1997)에 수록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유치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을 완화하는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조하며;

(h)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하여 단계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공동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 중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j)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여:

- (i) 대한민국의 기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며, 해당 비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 녹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들은 이를 위한 금전적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를 함께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 (a)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은 현재 수력 발전을 주된 전력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화된 수력 발전소 시설 설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 (b) 스위스, 미국은 자국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설립하는 공동에너지 기후변화체에 이전할 것을 약속하며;
- (c) 노르웨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한 공동의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병충해와 산림 조성에 대해 협력하며;
- (d) 노르웨이, 중국, 스위스, 미국은 대한민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에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유치하여 한반도 기후대응 프로세스를 견고히 할 것을 촉구하며;

4. 교토의정서(1997) 부속서 국가를 비롯한 지원국들은 비부속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이전과 자금 조달을 약속하며:

- (a) 스위스는 일조량이 풍부한 남미 지역과 중동지역 등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 병행을 약속하며;
- (b) 스위스 또는 노르웨이와 같은 탄소 중립 강국 내에 개발도상국의 연구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자국 내 민간기업에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합의하며;
- (c)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청정연료의 보급을 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 (d) 미국은 자국의 탈탄소 기업에 다양한 국가들의 투자를 받아 탄소 포집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탄소 포집 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 (e) 스위스, 미국은 자국의 탈탄소 기업의 개발도상국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기술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 (f) 그 과정에서 노르웨이와 스위스, 미국 등 지원국이 개발도상국의 석유 추출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 (g) 노르웨이와 스위스, 미국 등 지원국이 개발도상국 현지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현지에 탄소 절감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세울 것을 약속하며;
- (h) 노르웨이는 이란과 리비아와 같은 산유국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며:
 - (i) 원유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탄소의 양과 동일한 양의 탄소를 유전에 가두는 탄소 중립 원유 생산 기술의 공동 개발 협력을 촉구하며;

5. 교토의정서(1997) 부속서 국가를 비롯한 공여국들은 비부속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현대화 기술 보급 및 종자를 제공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예방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 (a) 미국은 유기질 축분비료의 지원을 통해 사막화가 진행되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양을 지속적으로 되돌릴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 (b)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의 적응품종 선발 및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별도의 연구소를 현지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 (c)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종자들의 품종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토양 적응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품종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을 장려하며;
- (d)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빈곤 감소와 탈빈곤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의 식량 생산과 공급 능력 증대에 관련된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e) 미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국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조제와 방파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6. 교토의정서(1997) 비부속서 국가들은 부속서 국가를 비롯한 공여국들의 지원 이후에 지속적인 석탄 감축을 통한 탈석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a) 비부속서 국가들은 부속서 국가를 비롯한 공여국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금전적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설비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b) 비부속서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석탄 감축을 시행하여 탈석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며;

(c) 비부속서 국가들은 더 이상의 삼림 파괴를 중단하여 산림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막을 것을 강조하며;

(d) 비부속서 국가들은 블루 카본(Blue Carbon)의 지속적인 보전을 통해 탄소 저감에 일조할 것을 약속하며;

7. 만일 상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의 비핵화 의무와 인권 개선 의무들이 합의된 수준에 의거하여 준수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와 대이란제재를 재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8. 상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의 의무들이 전부 준수될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당사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9. 교토의정서(1997) 부속서 국가들을 비롯한 공여국들의 지원을 받은 비부속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인권 수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a) 상기의 인권 수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를 이행하는 수준일 것을 촉구하며;

10.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시행과 그 과정에서의 남북 협력 실현을 제안하며:

(a) 개발도상국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탈석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야 함을 촉구하며;

(i) 전 개발도상국에 10년 이내에 탈석탄 선언을 요청하며;

(ii)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iii) 개발도상국이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환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b)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i)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설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ii)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인 수력발전의 확대 방안에 대한 협력 연구 및 기술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며;

(iii) 위 항목을 이행하는 데 있어 유엔환경총회 회원국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및 수력 발전 강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c) 대륙별 신재생에너지 협의체를 마련하여 대륙별 재생에너지 이슈 및 기술에 대한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 재생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i)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의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5년 주기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ii)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 대한민국, 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협의체를 마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논의 및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11.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식량 안보 위협과 식수 부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개선 및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a)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 부족 문제와 국내 시장 공급 문제, 그리고 식수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며;

(i) 가뭄으로 인한 식량 및 식수 부족이 여러 분쟁 및 기아 문제를 초래하며 인간안보를 위협함을 인지하며;

(ii)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 및 식수 부족 문제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b) 식량 생산에서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i) 해수담수화, 폐수 재활용 기술 등의 차세대 기술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ii) 노후화된 관개시설 재보수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iii) 선진국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며;

(iv)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 및 협력을 지지함을 강조하며;

(v) 선진국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에 관한 기술 이전을 받아 더 이상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은 추후 국제사회에서 식량위기에 처한 국가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vi) 공유하천 및 월경하천에서의 공동 물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c) 국제사회는 UN-SDGs의 하나인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및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달성 및 물 수요-공급 격차 해소를 위한 담수화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i) 파리협정(2015) 이후 국제담수화협회(IDA)는 저탄소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을 위한 GCWDA(Global Clean Water Desalination Alliance)를 발족함을 상기하며;

(ii)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ODA 사업의 상당 부분을 SDGs 이행과 연계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CPS(국가협력전략) 중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해수담수화 기술을 토대로 공여국, 다자기구, 소원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요청하며;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 상황에서 수자원의 무기화를 막고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댐과 수로의 사용을 공동 관리하며;

(i) 유엔환경총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수자원에 대한 평화적인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수자원 공동협력관리위원회에 중립국 대표를 파견하고;

(ii) 2018년 9월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을 목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결렬된 평양공동선언에서의 한강하구공동수역 재합의를 제안하며;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측 지역의 월경하천과 지역 공유하천에 대해서 대한민국 측과 수질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정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에 적극 참여하며;

(iv)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수자원 공급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남북협력과 기후외교의 차원에서 물 부족 국가에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v) 식량안보를 위한 수자원 공급 확대의 과정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12. 식량 안보를 위한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해 재해재난 예측에 대한 공동 경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a) 이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i) 재해재난의 이슈와 영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ii)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북이 점진적으로 통일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b) 접경지역에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한반도의 기후재난에 대한 대한민국 주도 하의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며;

(ii)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책임과 협조를 요청하며;

(iii)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 및 관리에 대해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과 공조가 필요하며;

13.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과 홍수에 강한 농산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a) 농산물 개발 사업은 남북이 합작해 북한지역에 신품종을 실험 재배하는 종자 생산기지를 조성해 품종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뜻하며;

(i) 신품종 개발에 성공하면 식량 증산은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유라시아 농산물 수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ii) 시범사업을 위하여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 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b)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북한 양국의 기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남북농업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c) 남북 외의 회원국이 남북에 식량 및 농자재 지원, 종자 생산 및 보급 지원을
약속하며;

14.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에 있어 국제사회 및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 식량안보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대륙별 협의체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b)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i)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금 모금에 기구 구성
국가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ii) 이 과정에서 식량안보와 기후위기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iii) 기금 지원에 대한 기후외교 방안으로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의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해수담수화 시설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c) 세계 각국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며;

(i) 그간 물관련 단일한 국제규범을 만들지 못한 것을 염두해 전세계가 참여하는 기금 신설과 함께 물관련 단일한 국제규범을 완성하며;

(ii) 기금의 모금은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ii) 각국은 자발적 모금을 위해 물과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가격 제도를 도입하며;

(iv) 이 과정에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d)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기술 협력에 필요한 여러 기술과 설비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공조할 것을 상기하며;

(e) 최종적으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과 전지구적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